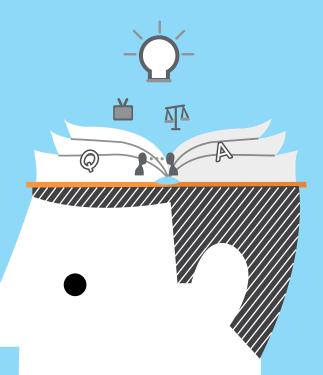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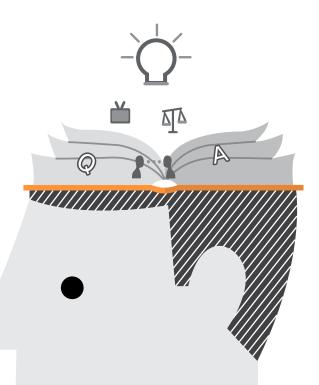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인 교육 교재

알면 유용한 **언론분쟁 Q**&A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인 교육 교재

알면 유용한 **언론분쟁 Q**&A







Chapter 1

	O에테 트	
1.	익명처리만 하면 누구인지 모를까?	8
2.	잠깐 비친 차량만으로 차주를 알 수 있나?	10
3.	익명보도 했지만 타 매체의 실명보도로 신원이 공개됐다면?	11
4.	독특한 화법만으로도 누구인지 알 수 있나?	12
5.	가족이나 친구만 알이볼 수 있는 기사인데 문제될까?	13
6.	[자료화면]임을 표시하면 사건과 무관한 영상을 써도 되나?	14
7.	기사 제목만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15
8.	범죄보도 시 단정적 표현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	16
9.	범죄 현장인 영업점의 상호는 가려야 하나?	17
10.	단정보도를 피하고자 인용 형식을 취했다면 면책될까?	18
11.	한 때 유명했던 인물을 공적 인물로 볼 수 있는지	19
12.	시의원의 특혜 의혹보도는 실명으로 가능할까?	22
13.	내사를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나?	23
14.	상인연합회장 횡령사건은 실명보도 할 수 있나?	24
15.	보도 대상을 직접 접촉할 수 없는 경우 주의 사항	25
16.	수사기관 간부가 준 정보를 근거로 보도했다면 면책되나?	26
17.	수사기록 열람 후 보도했다면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한 것인가?	27
18.	범죄 동기를 기사화하면 안 되는 경우와 그 이유	28
19.	전재한 통신사 기사에 대해 제휴사도 책임지나?	29



Chapter 2 초상권 침해

1. 얼굴 이외의 신체 부위도 초상권 보호 대상인가?	32
2. 사진의 얼굴 부분을 타인의 것으로 바꿨다면 초상권 침해인가?	33
3. 모자이크 처리만 하면 무단촬영해도 되나?	34
4. 망인의 초상을 사용하려면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35
5. 공인이 촬영을 거부하면 찍지 말아야 하나?	36
6. 공인과 동행한 일반인도 초상권 보호 대상인가?	37
7. 초상 촬영 및 공개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	38
8. 카메라를 향한 미소를 동의로 볼 수 있나?	39
9. 학교장 동의만으로 학생 촬영이 가능할까?	40
10. 공공장소에서의 촬영도 본인 동의가 필요한가?	41
11. 공개 행사 참석자들도 동의 받고 찍어야 하나?	42
12. 집회•시위 장면도 동의 받고 촬영해야 하나?	43
13. 동의 받고 촬영한 영상은 다른 방송에 활용해도 되나?	44
14. 언론사 DB 내 사진이나 영상 재사용도 초상권 침해인가?	45
15. 초상 사용 동의를 보도 직전 철회한다면?	46
16. 유명인의 SNS 사진은 동의 없이 쓸 수 있나?	47
17. 몰카 동영상을 보도하면 초상권 침해인가?	48

18. 생방송에서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나?		
19. 범죄보도 시 수갑이나 포승줄을 꼭 가려야 하는 이유	50	
Chapter 3		
사생활 · 음성 · 성명권 침해		
1. 범죄 현장인 피해자 집 내부를 공개할 수 있나?	52	
2. 자택 내 공인을 무단촬영하면 사생활 침해인가	53	
3. 유명인의 열애사실 보도 시 주의점	54	
4. 공무원이 업무 관련자와 식사한 것을 사생활로 볼 수 있나?	55	
5. 수사기관 보도자료에 있는 피해자 신원을 공개하면 사생활 침해인가?	56	
6.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 개인정보를 기사화해도 되나?	57	
7. 수사 중인 경찰과 동행 취재하는 것은 문제없나?	58	
8.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기사로 공개됐다면?	59	
9. 음성변조는 어느 정도로 해야 안전한가?	60	
10. 기사에 쓴 가명이 특정인의 실명과 일치한다면 성명권 침해인가?	61	
11. 제3자가 소개한 취재원에게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할까?	62	



Chapter 4언론분쟁 해결절차

1.	보도의 진실 여부를 누가 증명해야 하나?	6
2.	외주 제작 프로그램이 문제될 경우 발주한 방송사도 책임 있는지	6
3.	중재부는 언제 직권으로 손해배상을 결정하나?	6
4.	신청인의 주장이 실익이 없는 경우 조정 처리 절치는?	6'
5.	언론사와 더불어 기자도 소송 대상인가?	68
6.	언론사가 소송에서 진 경우 기자에게 금전 책임을 물을 수 있나?	6



Chapter 5

기 타 (형사처벌, 저작권 침해 등)

1.	기자가 신분을 속이고 취재했다면 문제되나?	72
2.	취재와 관련해 업무방해죄는 언제 성립하나?	73
3.	사석에서 공인과 대화 도중 무단녹음하면 위법한가?	74
4.	무단녹음된 음성파일을 제3자가 공개하는 경우 문제점	75
5.	기사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76
6.	전시된 일부 작품을 보도했다면 저작권 침해인가?	77
7.	보도비평 목적의 타사 영상 사용도 문제가 되나?	78
Ω	오른 여자 나오이 되자님 취레이기의	70



익명처리만 하면 당사자 특정 문제에서 자유롭나?

А

당사자 특정 문제는 주로 명예훼손에서 문제되곤 한다. 그런데 실명을 쓰지 않고, 성씨나 이니셜만 사용했더라도 당사자 특정이 인정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법원은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기사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면 기사가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정된 것으로 보았다(2008다27769). 심지어, '○○ 지역 검사들'과 같이 대상을 뭉뚱그려 집단으로 표시한 경우라도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기도 했다(2002다63558).

결국, 당사자 특정을 피하려면 단순 익명처리뿐 아니라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주변 정보 또한 표시하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한다.

※ 집단표시에 의한 당사자 특정 여부

특정이 인정된 사례

-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 (49명)
- 국방부 검찰단 (39명)
- 3 · 19 동지회 교사들 (37명)
- 독도경비대 (37명)
- 대전 지역 검사들 (31명)
- 계룡대 해군 법무장교 (25명)
- 충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21명)
- 모 아파트 동대표 (19명)
- 검찰특별수사본부 검사 (10명)
- 기무사 현역 장성들 (8명)
- 서울시장의 비서관 한 사람 (4명)

특정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파업 중인 MBC 노조원 (140명)
- 육군 검찰 (170명)
- 여성 아나운서 (295명 이상)
- 법성포 굴비업체 (400개)
- 노사모 회원 (2,870명)
- 정신과 의사들 (3.162명)
- 5 · 18 민주유공자 (7.056명)
- 안성시 공무원들, 국정원 직원, 영양시들, 독립운동가

교통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방송에 내보냈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이 1초 정도 나왔는데 당사자 특정이 인정될 수 있나?

А

당사자 특정은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으로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인정될 수 있다(2001다28619).

문제의 차량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류의 것이라면 당사자 식별이 어렵겠지만, 매우 희소하거나 특이한 외부 인테리어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특정이인 정될 수도 있다. 사례로는 평범한 회사 사무실 내부였지만 사훈이 방영되어 당사자 특정이 인정된 판결(2005나 10977)이 있고, CCTV에 담긴한 정육식당의 내부 모습이순간적으로 보도되었으나 단골 손님들이 해당 가게를 알아봤다는 이유로 당사자 특정이 인정된 조정사건(2015 서울조정2859)이 있다.

익명처리를 철저히 했으나 다른 언론사가 실명보도를 하는 바람에 당사자가 특정된 경우, 우리 언론사에도 명예훼손에 따른 책임이 있나?

Α

법적 책임은 자기 행위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자신의 잘못이 아닌 행위에 대해서까지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

명예훼손에서 문제되는 당사자 특정 여부는 해당 언론 사 보도 내용을 위주로 그 이전까지의 상황만을 고려하 여 판단한다. 다시 말해,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방 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 기사에 달린 댓글까지 고려하지 는 않는다.

결국, 철저한 익명처리를 통해 피해자 신원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언론사가 그 후 이루어진 다른 언론사의 실명보도로 인해 명예훼손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한편, 이 사안의 경우 당사자 특정 여부와는 별개로 정 정 · 반론보도 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 판례는 피해자와 보도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으면 정정 · 반론보도청구를 허용하므로 보도 전후의 사정을 불문하고 보도 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이기만 하면 정정 · 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2009다52649).

인적 사항이 아닌 특유의 말투나 개성적인 표현으로 인해서도 당사자 특정이 인정될 수 있나?

А

당사자 특정이란, 기사 내용과 보도 당시 상황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누구에 대한 보도인지 알 수 있음을 의 미한다. 따라서 당사자 특정의 전형적 요소인 이름, 나이,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이 표시되지 않았어도 음성이나 신체 적 특징, 특유의 말투, 개성적인 표현 등을 통해서도 당사 자는 특정될 수 있다.

관련 사례로 대학생 인턴제도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기사에서 해당 단체명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취재원인 학생의 인터뷰 발언 중 해당 단체 대표가 즐겨 사용하던 표현("○○○ 박물관장도 낙엽 쓸고 청소한다")이 인용됨으로써 피해자 특정이 문제돼 기사를 수정한 것이 있다.

당사자 특정을 피하고자 한다면 당사자 신상 정보 외에 도 주변인들이 보도 대상을 유추할 수 있는 특유의 행동, 언어 습관 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표시해야 한다.

당사자의 가족이나 친구 등이 아니면 누군지 알 수 없을 정도인데 당사자가 특정된 것인가?

Α

명예훼손이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 평판'으로서 학교나 직장 동료, 친구, 친척 등 같은 생활영역에 속하는 사람들 로부터 받는 평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당사자 특정 여부 또한 가까운 사람들의 인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법원은 당사자를 인식할 수 있는 주체를 보도 대상과 무관한 사람이 아닌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로 본다(2009 다49766). 그래서 보도 대상의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이 기사를 보고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당사자가 특정되었 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일반인에 대한 보도라면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조차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익명 처리가 필요하다.



[자료화면]임을 표시하고 직접적 관계가 없는 관련 영상을 사용했다. 문제가 있나?

А

방송뉴스에 사건과 무관한 대상이 자료화면으로 나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자 료화면]임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조 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보도내용이 무엇인지를 판단한다(2007다29379). 이렇게 보면 [자료화면]이라는 표시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화면에 나온 대상을 사건과 관련 있다고 오해할 위험성이 크다.

오해를 막기 위한 최선책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영상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다.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차선 책으로 [해당 영상은 보도 내용과 무관함]과 같이 보다 명 확한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사 제목만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

Α

기사 제목은 기사의 전체 인상을 좌우하며, 독자나 시 청자가 신속하게 사건의 핵심과 기사 본문 내용의 대강을 파악하게 하는 색인기능을 한다. 기사 제목에 오류가 발 생하면 독자들로 하여금 기사 전체 내용을 오해하게 할 위 험 또한 높아진다.

법원은 "(기사) 제목만을 따로 떼어 본문과 별개로 다루 어서는 아니 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 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 로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 목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한다(2006다60908).

다른 판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피의자를 기소 됐다며 제목을 잘못 단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2014가합22).

범죄보도 시 단정적 표현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А

수사 중인 범죄사건 보도 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빚 독촉하자 살해'와 같은 단정적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 는 위법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4항 및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 따라 범죄피의자는 유죄판결 확정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법원은 "(언론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0다50213).

이에 따라 단정적 범죄보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도 후 당사자의 무혐의 또는 무죄가 밝혀진 경우 허위 보도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결국, 수사 중인 범죄사건을 기사화할 때에는 단정적 용어나 표현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



범죄 현장을 담은 뉴스영상에 범죄가 발생한 영업점의 상호가 노출되었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야 하나?

Α

범죄 현장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우선, 해당 영업점의 운영자가 범죄혐의자인 경우라면 모자이크 처리해야 한다. 상호 노출로 당사자가 특정되 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불법 사 행성 게임장에 관한 방송보도를 하며 해당 업소를 알아 볼 수 있게 보도한 것은 "(해당 게임장은) 공공기관이 아 닌 사적 영업장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2013가단33175).

다음으로, 해당 영업점이 단지 우연히 범죄 현장이 된 경우다. 이 경우는 운영자가 범죄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데 비록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해당 영업점의 영업상 불이익이나 금전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호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정보도를 피하고자 인용부호 처리를 하면 명예훼손 책임을 피할 수 있나?

А

범죄보도에서 단정적 표현 사용과 더불어 중요하게 고 려되어야 하는 점이 기사의 전체 인상과 맥락이다.

법원은 기사가 보도하는 사실이 무엇인지에 관해 "일 반 독자의 기준에서 볼 때 전체적인 인상과 맥락"(2005다 65494)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한 형식에 의하 든 또는 전문한 형식에 의하든"(2005나102241) 기사 형 식을 불문하고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 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인용 형식의 보도라고 해서 항상 명예훼손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범죄보도 시 기사 본문 중에 해당 수사기관이나 담당 형사의 진술을 토대로 '~ 혐의를 받고 있다' 내지는 '경찰은 조사 결과 ~ 라고 밝혔다' 정도로 쓰는 것은 안전하겠지만 기사 제목 등에서 유죄의 인상을 주는 표현을 인용 형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상파 오락 프로그램 출연 등으로 한 때 화제가 됐던 사람을 공적 인물로 볼 수 있나?

Α

특정인을 공인 내지 공적 인물로 볼 수 있으려면 보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인물에 관한 보도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해야 한다. 단지 과거 공인이었다는 이유 만으로 현재 시점에서도 당연히 공인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한 때 TV 탤런트로서 인기드라마 여주인공을 맡는 등 공인의 신분이었지만 결혼 후 가정생활에 전념하며 20년간 연예활동을 하지 않은 원고를 더 이상 공적 인물이 아니라고 판시했다(2006가합24129). 또, 10여 년 전도지사로 재직한 인물도 공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본 판결(2014가합593576)도 있다.

보도에 시의성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보도의 공익성 역시 현재 시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 판결로 본 공인 기준

공인으로 인정된 사례

- 대통령 국회의원, 4급 이상 고위공무원
- 기초광역단체장 및 의원, 시의원, 공공기관장
- 세인의 관심을 받는 대통령 이들
- 세인의 관심을 받는 대통령 조카사위
- 재벌그룹 회장 또는 부회장
- 유명 언론사 대표
- 방송사 국장
- TV 뉴스앵커를 지낸 방송사 보도국 차장
- 영화배우 등으로 활동하는 연예인
- 유명 프로야구 선수
- 공영방송 PD
- 대학 총장
- 대표적인 시민단체에 소속된 대학교수
- 국회의원 후보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연구원장)
- 변호사
- 여대생 시절 전대협 대표로 밀입북하여 세간에 상당히 널리 알려진 인물
- 다수 교인이 속한 교회 대표자
- 정치 · 이념적 의견표명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언론기관을 포함하여 사회 전체의 관심 대상이 되어 온 사람
- 사단법인 협회 회장으로 언론에 칼럼을 게재하는 등 대외활동을 활발히 한 자

공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 방송사 최대주주
- 전직 구의회 부의장
- 지역사회에서 인지도가 있는 택시노조활동가
- 유명 가수의 결혼 상대로서 미스코리아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는 사람
- 일반인이 범죄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된 경우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장교 살해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부사관
- 평범한 정신과 의사
- 집단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매체에 몇 차례 인터뷰하고 기사화된 적이 있는 변호사
- 유명 기업인과 결혼 예정인 여성
- 연예계에서 은퇴한 후 가정생활에 전념하고 있는 전직 연예인
-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사무국 실무 직원
-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
- 5급 법원 사무관

* 보도 범위와 한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분적 요소(공적 존재 여부)"와 "표현 내용(공적 관심 사안 여부)"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에서 비교 형량하는 것이 중요하다(2000다37524).

전체 의원 수가 10명이 채 안 되는 시의회 의원 중 일부가 해당 지자체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부당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실명보도와 익명보도 중 어느 쪽을 택해야 하나?

А

선출직 공무원은 전형적인 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서 그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보도는 고도의 공익성이 인 정돼 실명보도가 허용된다.

판결 중에는 현직 시의원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가 '공인'에 해당하며 그가 지자체로부터 부당한 특혜 를 받았는지 여부는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청렴성에 관한 사항으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있다 (2013 가합1740).

그러므로 이 사안은 실명보도가 가능하다. 특히, 집단의 규모가 작고 구성원 일부에만 해당하는 문제를 익명으로 보도하면 혐의가 없는 구성원들까지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실명보도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경찰의 내사가 진행 중이다. 익명으로 보도해야 하나?

Α

내사 중인 범죄사실이라도 해당 혐의가 공인에 관한 것 이면 실명보도가 가능하다.

한 중앙일간지가 현직 공공기관장이자 전 차관으로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이기도 한 원고의 업무추진비 부 당사용 등에 관한 내사 사실을 실명으로 보도했다. 이러한 기사에 대해 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 및 업무처리의 적 정성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고 실명보도의 당위성을 인정했다(2013나2016075).

다만, 내사 중인 사건이라면 수사 중인 사건과 달리 범 죄혐의가 매우 불확실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매우 신중하 게 보도해야 한다. 내사 중인 사건을 보도했다가 당사자 로부터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제기를 받는다면 보도의 진 실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상인연합회장이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실명보도가 가능한가?

А

범죄보도에 적용되는 '익명보도의 원칙'에 따르면, 범인이나 범죄혐의자가 공적 인물이 아니면 일반 국민이 그 신원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익명으로 보도해야 한다(2006다65620).

문제는 실명보도가 기능한 공적 인물의 범위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나 선출직 공무원과 같은 전형적인 공인에 해당하지 않아도 실명보도가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협회장으로서 경제지에 고정 칼럼을 게재해 온 인물을 공인으로 본 판결(2003가합70749)이 있고, 사회단체대표로서 저술ㆍ기고ㆍ방송ㆍ토론회 참석 등으로 그 신상이 널리 알려진 자역시 공적 인물로 인정한 판결(2014 가단123116)도 있다.

상인연합회장이라는 신분만으로는 공인으로 보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직위를 이용한 각종 대외활동 등으로 지역 내 인지도가 높다면 실명보도가 기능할 것으로 본다.

보도 대상을 직접 접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문제 발생 시 책임을 피할 수 있나?

Α

보도 대상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취재의 기본 이다. 문제는 당사자의 연락처를 도무지 알 수 없거나 연 락을 해도 받지 않는 경우다.

이런 경우라도 일단 당사자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언론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판결 중엔 당사자 본인의 소재를 파악하고자 노력했으나 알 수 없어 불가피하게 생략했다는 언론사 측의 항변을 "(소재를 파악하려는) 방법이 부적절했다"는 등의 이유로 배척한 것이 있다 (94다33828). 그러므로 휴대폰 문자나 SNS 쪽지를 보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다는 정도만으론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당사자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당 사자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을 취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사기관 고위 관계자가 준 정보를 근거로 보도했다면, 오보라도 면책되나?

А

오보가 발생한 경우 언론사 면책의 관건은 보도의 근거가 된 자료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 여부다. 수사권이었는 언론사로서는 진위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 고위 관계자의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역시 불확실할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법원은 한 중앙일간지가 고위 검찰 간부로부터 받은 정보를 근거로 추가 취재를 전혀 하지 않은 채보도한 기사의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2004나86175). 이와는 반대로, 수사기관이 공식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한 기사는 추가 취재나 별도의 사실 확인이 없었어도 상당성을 인정했다(97다10215).

결국, 중요한 것은 자료의 신뢰도인데 정보원의 직위의 높고 낮음만으로 자료의 신뢰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해 당 자료가 정해진 절차를 밟아 공식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를 보아야 하고, 만일 비공식 자료라면 추가 취재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 관계자의 도움으로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보도했다면, 오보라도 면책되나?

Α

범행 여부가 밝혀지는 것은 수사 단계가 아니라 재판결 과가 확정될 때다. 수사기록이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기자로서는 사실 확인을 위한 노 력을 충분히 기울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기 록이 범행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를 단순히 열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 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다(2004다53425). 게다가, 기자에게 수사기록을 열람할 법률상 권한이 없다.

수사기록을 열람한 행위는 범죄사실에 대한 비공식 확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오보가 발생한 경우 상당성의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살인 사건을 보도하며 경찰이 알려준 범죄 동기 (의처증)를 그대로 기사에 썼다. 문제되나?

А

범죄 동기는 대개 주관적인 것이어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수사기관이 밝힌 범죄 동기 또한 추측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이를 그대로 기사화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한편, 피의자들 중에는 범죄의 일부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기사화할 시 보 다 큰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불륜이 살인 동기가 되었다거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내연 관계였다는 식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 소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할 수 있다

범죄보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련자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다. 수사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기사화했 더라도 보도의 최종 책임은 언론사에 귀속됨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재한 통신사 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제휴사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

Α

일부 언론사는 자체 기사만으로 지면을 채우기 어렵거나 다른 정책적 고려가 있어 통신사 기사를 전재하기도 한다. 이때 언론사의 책임 문제는 두 경우로 나뉜다.

우선, 전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재 기사라도 형식상 자체 기사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전적으로 해당 언론사가 진다. 법원은 "(전재)기사를 게재하면서 도 그 전재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직접 취재 한 것처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기 책임 하에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98나25445).

다음으로, 전재 표시를 한 경우는 통신사와 해당 언론 사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통신사 가 제공한 기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언론사와 통신사 가 내부적으로 책임 비율을 정하여 자기 책임 부분을 넘어 서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편집 실수로 변형된 특정 단체의 로고가 방송뉴스에 사용되었다면, 명예훼손이 되나?

А

'일베' 회원들이 기업 및 대학 로고를 변형해 인터넷상 에 유포하고 이것이 여과 없이 방송뉴스에 나가 논란이 된 적이 몇 차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아직 판결은 없지만, 한 방송사가 유명 사립대간 농구경기 결과를 보도하며 '일베' 회원이 특정 학교를 비하하려고 만든 유사 심볼 마크를 배경화면에 노출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의'를 의결하는 공관련 심의사례가 다수 있다.

이처럼 변형되거나 왜곡된 로고 등이 보도에 사용되면 해당 언론사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로고의 당사자인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해당 로고가 특정 단체를 모욕할 목적으로 변형 되었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면 별도의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으므로 편집 과정에서 정밀한 필터링이 필요하다.



얼굴이 아닌 다른 신체 부위도 초상권 보호 대상인가?

Д

초상권은 사람의 얼굴만이 아니라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보호하는 권리다.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 중 얼굴이 아닌 등과 뒷모습이 노출된 방송뉴스와 관련하여 "그 사진에 나오는 신체 부분이 원고의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원고의 초상권은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여초상권 침해를 인정하기도 했고(99가합109817). "신체의일부만으로는 피촬영자의 특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지그의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부정하기도 했다(2011가합10952).

결국, 초상권 보호 대상인지 여부는 신체 어느 부위까지 보호해야 하는가와 같은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해당 신체 부위 노출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가라는 실질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진의 얼굴 부분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꿔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가 되나?

Α

초상권은 사람의 얼굴만이 아니라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보호하는 권리다.

법원은 한 외국인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그 얼굴 부분만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바꿔 광고에 사용한 사안에서 "인물이 변형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체격, 머리카락, 옷차림 등) 및 주위 사정 등을 통해 사회통념상 원고로 식별될 수 있다면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여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2014나9419).

따라서, 초상권 보호의 핵심은 당사자 식별이 가능한지 여부이고 이 동일성 식별에 대한 판단은 일반인의 시각을 기준으로 '사회통념상 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는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동의 없이 촬영했지만 모자이크 처리를 철저히 하고 보도에 사용했다. 초상권 침해가 되나?

А

초상권은 자신의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 을 권리를 의미한다(2004다16280). 이에 따라 초상권은 촬영·작성거절권, 공표거절권, 초상영리권으로 구분된다.

일단, 공표 단계에서 개인의 신체적 특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자이크 처리를 철저히 했다면 공표거절권침해는 아니다. 문제는 동의 없이 촬영된 부분인데 이것은 촬영·작성거절권 침해의 문제로서 언론사가 모자이크 처리를 철저히 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초상권이 공표 단계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촬영·작성 단계에서부터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망인(亡人)의 초상을 사용하려면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Α

언론중재법 제5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인격권은 사망 후에도 30년 동안 법적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망인의 초 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살아있는 사람과 유사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문제는 망인의 초상권 사용 등에 대한 동의 등 처분권 한을 누가 갖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법은 망인 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동의권한을 행사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제5조의2 제4항).

결국, 망인에게 상속인이 있는지를 살펴 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참고로, 1순위 상속인은 망인의 배우 자 및 직계비속이다.

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진 촬영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면 찍지 말아야 하나?

А

공적 관심사를 보도할 시 공인의 인격권은 일반인에 비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 만일 기자가 취재 중인 사안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면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초상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이런 때에는 공인이라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의사에의해 취재가 제한될 수 있다. 법원은 "찍은 사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사진을게재한 것"을 초상권 침해라고 판시한 바 있다(2011가합13890). 다른 판결에서는 단순한 사생활 영역으로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아니라면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할수 있다고도 했다(2012다31628).

그러므로, 공인 취재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공적 관심사가 아니 라면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인과 동행한 일반인도 초상권 보호 대상인가?

А

공인의 검찰 및 법정 출석 시 이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동행인의 초상권 침해가 자주 문제되고 있다.

우선, 일반인이 공인과 동행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적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동행인의 초상에 대한 동의 없는 촬영 및 공개는 문제될 소지가 크다.

다음으로, 묵시적 동의의 인정 가능성이다. 공인과 동행했다면 자신의 모습이 촬영, 보도될 수 있음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동행인이 촬영에 명시적 거부의사를 밝히면 결론은 달라진다. 동의를 강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당사자의 명시적 거절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조정사례 중에는 피촬영자가 명시적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고 공인과 함께 촬영된 경우,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여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고(2015서울조정2478),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지 않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도 있다(2015서울조정3414).



초상 촬영 및 공개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

А

초상권에 대한 당사자 동의는 다양한 형태로 가능한데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 또한 유효하다. 다 만, 묵시적 동의는 명시적 동의와 비교할 때 동의의 범위 가 불명확하여 분쟁의 여지를 남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명시적 동의는 다시 문서와 비문서 형태의 동의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연동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 형태의 동의로서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방법이다. 문서 형태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동의 의사를 표시하는 장면을 녹화하거나 음성 녹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왕 동의를 받는다면 분명한 형태로 받는 것이 좋다. 촬영 및 공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하게 기재하여 문 서나 음성의 형태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추후 갈등을 줄 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는 것을 동의로 볼 수 있나?

А

초상권에 대한 당사자 동의는 다양한 형태로 표시될 수 있다. 말이나 문서로 하는 명시적 동의가 있고 행동이나 표정으로 하는 묵시적 동의도 있다. 후자의 대표적 예는 포토라인에 서서 포즈를 취하는 행동일 것이다.

문제는 묵시적 동의의 경우, 명시적 동의와 비교할 때 동의 여부 및 범위가 다소 불명확하여 분쟁의 여지를 남긴 다는 것이다. 판결 중에는 촬영사실을 알고 인터뷰에 응했지만 "그 촬영이 어느 방송에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초상 사용에 대한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있다(2005가합18444).

그러므로, 초상권 분쟁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명시 적 동의를 받는 것이고 묵시적 동의의 경우 촬영주체와 목적을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할 것이다.



학교장 동의 하에 초등학교 행사에 참여 중인 학생들의 사진을 촬영·보도했다. 초상권 침해인가?

А

초상권의 주체가 누구인지, 초상 촬영 및 공개에 대한 동의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다

이 사안에서 초상권의 주체는 촬영 대상인 학생들이며, 초 상 촬영 및 공개에 대한 동의 역시 해당 학생들에게 받아 야 한다. 문제는 초등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점이다.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로서 혼자서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통상의 경 우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된다.

결국, 학교장의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학부모 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공원, 광장, 행사장, 야구장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사진 촬영에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가?

А

공공장소라고 해서 사진 촬영이 항상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해당 공공장소의 용도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사진 촬영이 예정되어 있고 그 사실이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어 있다면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촬영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장소일지라도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고하여 공공장소 역시 초상권 침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2004다16280). 이 외에도 도로, 경기장, 대형서점, 대학 캠퍼스 등과 같은 다양한 공공장소에서의 사진 촬영에 당사자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이지급된 여러 조정사례가 있다

결국,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이라도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반인의 참여가 허용된 행사에 참석 중인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보도할 때도 당사자 동의를 얻어야 하나?

А

일반인의 자유로운 참여가 허용된 행사라면 공개성이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촬영이나 보 도가 무제한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원은 "원고들이 송년회에서 노래하며 춤추는 장면을 동의 없이 방영한 것은 송년회를 주최한 곳의 협조 및 당사자들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바있다(2006가단56477). 조정사례 중에도 지자체가 주관한 페스티벌에 참여한 일반 시민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이유로 초상권 침해를 인정, 손해배상과 사진삭제로 합의된 바 있다.

초상권 침해 논란을 피하고자 한다면 행사장 곳곳에 언론의 취재와 보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여 행사 참가 자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집회 · 시위 장면도 동의 받고 촬영해야 하나?

А

집회 및 시위란 본래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일반에 널리 알릴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의 없이 집회·시위 장면을 촬영, 보도했더라도 초상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하는 행위는 독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특별히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한 면책된다"고 보았다(2009가합81994). 이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왜 곡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모욕·비방을 목적으로 초상을 촬영한 경우에는 집회·시위 사진(영상)이라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동의를 받고 찍은 영상이라면 방송 제작 시 다양하게 활용해도 되나?

А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다양한 용도로 초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해당 영상을 다른 방송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고 동의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이 같은 경우 문 서로 동의 의사와 사용 범위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다른 방송 제작과 관련해 아무런 의사도 표시하지 않은 경우다. 법원은 "해당 방송을 영리 목적으로 대량복제, 판매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 방영하는데 제공하는 것은 방송프로그램의 통상적 이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촬영 동의외에 원고의 추가적인 동의를 얻었어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초상권 침해를 인정했다(2005가합2739).

결국, 동의를 받고 촬영한 영상이라도 해당 방송이 아 닌 다른 방송에 활용하려면 당사자의 추가 동의가 필요 하다.

언론사 DB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재사용한 것이 초상권 침해일 수 있나?

А

언론사 DB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자료화면 등으로 재사용했다가 문제된 사례들이 있다. 피촬 영자들이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재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초상권 사용에 대한) 승낙 여부 및 승낙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표를 승낙하였더라도 추후 그 초상을 원래의 목적과 다른 형태로 공개하거나 … 당사자가 동의한 때에 전혀 고려할 수 없었던 사정 하에서 공표하였다면 그 공표는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보고 있다(2005가합2739).

따라서 재사용에 대해 미리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았다 면 추가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상 사용에 동의했던 사람이 보도 직전 사용 금지를 요청했다. 당사자 요청에 따라야 하나?

А

초상 사용의 반대급부로서 대가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우선, 대가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당사자의 사용 금지 요청은 유효하고 언론사의 초상 사용은 제한된다. 즉 당사자의 초상 사용에 대한 동의 철회를 막을 마땅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가 지급에 대한 약정(대개 계약서나 약정 서 등에 당사자 서명을 받았을 것이다)이 있었거나 이미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면 언론사와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 계가 성립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변심에 의한 동 의 철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당사 자의 사용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초상 사용이 가능하다.

유명인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을 동의 없이 보도에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가 되나?

Α

유명인이 일반인에 비해 초상권, 사생활 등 인격권 보호의 범위가 다소 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하지 않은 사적 영역을 공표하는 것은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보도에 사용된 사진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부터 검토해야 한다. 사적 영역이라도 내밀영역, 비밀영 역, 사사적 영역, 사회적 영역, 공개적 영역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내밀하거나 비밀스러운 사 항이 담겨 있다면 당사자가 유명인이라도 초상권 내지 사 생활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SNS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SNS가 어느 정도 공개된 공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SNS에 올라온 모든 사진을 보도에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공개 범위를 제한하여 친구 외에는 볼 수 없는 사진이라면 초상권 침해 가능성은 더 커진다.

몰카 동영상을 보도하면 초상권 침해가 되나?

А

법원은 과잉진료 문제를 고발하고자 한 병원 내 진찰 및 처방 장면을 몰래 촬영 · 보도한 사안에 그 공익성을 인 정하고 원고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했다는 이유로 초상 권 침해 역시 부정한 바 있다(2007가합9017).

또 다른 판결에서는 "이용된 초상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 공표가 ··· 오로지 공익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사진의 내용, 촬영의 수단과 방법이 보도 목적에 비추어 필요성과 상당성을 가지는때에는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2010가합106837).

결국, 해당 사안이 공적 관심사로서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한다면 몰카 촬영 및 보도는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공인이 아니라면 모자이크, 음성변조 등으로 인격권 침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생방송 중에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는가?

А

생방송은 그 특성상 모자이크나 블러(blur)와 같은 초상 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정만으로 초상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주의를 요한다.

법원은 "생방송 중이어서 원고 얼굴 등에 바로 모자이 크 등의 처리를 하는 것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피고는 여러 대의 카메리를 이용하여 수색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장면 내지 원고의 모습을 식별하기 어려운 장면을 방송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여 생방송에 의해서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2014가합51744).

범죄보도 시 수갑이나 포승줄은 모자이크 처리 등으로 반드시 가려야 하나?

А

경찰청 '수갑 등 사용지침(2014, 6, 1,)'에 따르면, 피의 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수건 등으로 수갑을 가려 피의자 가 인격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피의 자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언론 역시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수갑이나 포승줄이 보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해당 사항이 경찰청 내부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곧장 위법하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법적으로 보다 중요한 사항은 단순한 수갑 · 포승줄 노출이 아니라 피의자 신원공개 여부다.

헌법재판소는 "기자들에게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은 어떠한 공익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 범죄자의 신원 공개를 위법하다고 보았다(2012현대652).



사생활 · 음성 · 성명권 침해

범죄 현장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내부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가?

А

범죄 피해자의 집 내부는 범죄 현장일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개인의 사적 공간이다. 따라서 집 내부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법원은 "피해자인 원고들의 집 위치를 표시한 지도 및 집 내·외부를 촬영한 사진에 관한 부분은 그 공개가 불가 피한 사항들이라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한 언론보도에 대해 사생활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2014나2016492).

한편, 언론에서 범죄 경위를 설명하고자 피해자의 집 내부를 단순도식화하여 그림으로 공개한 사안에는 실제 집 내부를 공개한 사건과 달리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자택에 있는 공인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인가?

Α

공적 관심의 대상인 공인이 자택이라는 사적 공간에 있는 사안이어서 획일적으로 사생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관건은 해당 기사나 사진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익형량의 원칙상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를 넘어서는 공익적 요청이 있었는지가 될 것이다.

법원은 한 거물급 정치인이 측근들과 자신의 자택 거실에 모여 회의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보도에 대해 사생활침해가 아니며 설령 사생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치자금 지원에 대한 의혹을 받는 상태에서 그 측근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위법성을 부정했다(2002가합13985).

결국,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적 공간에 있는 모습까지 항상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보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유명인(연예인, 스포츠스타)의 열애사실을 보도하면 사생활 침해인가?

А

개인의 연애사는 전형적인 사생활에 해당할 것이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에 해당하고 또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 방법이나 내용이 부당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처럼 공적 인물의 경우 그 공개 범위가 보다 넓다고 할 수 있다.

판결은 모 재벌 그룹 부회장의 상견례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상견례 및 결혼 사실 등 일반적 사항을 보 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상견례 현장 의 구체적 분위기, 대화 내용까지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 한 것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침해방 법 역시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사생활 침해를 인정했 다(2012다31628).

요컨대, 유명인의 일반적인 열애사실, 결혼사실 보도는 위법하지 않으나 지나치게 집요하고 상세한 보도는 사생 활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관련자와 식사하는 장면을 포착, 보도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Α

해당 기사가 공적 영역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은 "시청 공무원인 원고가 직무관련자인 민간어린 이집 원장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공직자의 청렴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에 언론의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3가단(39476)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공적 영역과는 무관한, 단순한 사적 만남일 수 있으므로 무차별 의혹 제기는 금물이다. 즉, 의혹을 제기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 취재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 보도자료에 있는 피해자 신원을 공개하면 사생활 침해인가?

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는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 등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규정 위반 시에 따를 수있는 제재나 형벌이 없더라도 언론에 의한 피해자 신원 공개는 위법하다고 보이야 한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 낸 보도자료가 권리 침해를 정당 화하는 것은 아니다. 보도가 될 것인지 여부 및 보도 내 용을 편집할 권한은 해당 언론사에 있으므로 보도에 따 른 최종 책임 역시 언론사에 귀속된다는 점을 항상 염두 에 두어야 한다.



경찰 보도자료에 기재된 피의자 개인정보를 기사에 모두 표시하면 안 되나?

Α

국가기관이 낸 보도자료라고 해서 권리침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최근 보도자료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즉, "원고들에 대한 피의사실과 함께 공개된 원고들의나이, 주소, 범죄전력은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와 무관하여이를 공개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표 내용 일부의 공공성 및 공표 필요성, 공표된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그 표현방법의 적정성 등이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공표로 인한 국민들의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의 충족보다 원고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침해가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보도자료 배포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2014나2810).

따라서 피의자 개인정보가 보도자료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익명보도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보도의 최종 책 임 역시 언론사에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수사 중인 경찰과 동행하여 개인의 주택 또는 영업장에 들어가 취재하는 것에 문제는 없나?

А

주택 또는 영업장은 개인의 사적 공간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들어가면 설령 수사기관이라 할지라도 불법주거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판결 중에는 음대 교수의 작업실에 압수 · 수색 중인 경찰과 동행하여 들어간 기자들에 대하여 "원고의 연습실과 같은 개인의 사적인 장소는 비록 취재 당시 원고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체포와 관련되어적법절차를 갖춘 사람 이외에는 관계자의 동의 없이는 출입이 금지되고 그 곳에서의 취재도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판시한 것이 있다(99나66474).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기사로 인해 공개되었다면 언론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

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이에 따라 언론보도에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이 표시되었다거나 신원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30조 제1항 제2호). 다만, 내부고발자 스스로 자신의 신원 공개를 동의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는다(제12조 제1항 단서)

조정사례 중에는 모 제약사의 내부 문제를 고발했던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끔 보도한 언론사가 손 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2013서울 조정36).



음성권 침해를 막기 위한 음성변조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

А

음성변조, 모자이크 처리를 비롯해 인격권 침해 일반에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해야 한다.

법원은 음성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음성을 변조하는 등 원고 주변 사람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피촬영자가 원고임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이를 방영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96다11327), 당사자의 동일성 식별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조정사례 중에는 음성 변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약하여 음성권 침해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으로 이어진 것(2015서울조정2237 · 2238)이 있다.

결국, 음성변조를 한다면 음성에 의한 당사자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해야 할 것이다.

범죄피해자 신원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가명과 동일한 이름의 인물이 있었다. 성명권 침해인가?

Α

범죄피해자가 속한 집단 내에 가명과 일치하는 이름이 있다면 성명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우선, 가명이 아닌 단순 익명처리로도 당사자 신원 보호는 충분히 기능하다. 그럼에도 가명을 사용한다면 사용된 가명이 실제 이름과 일치할 수 있는 기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와 동일한 집단 내에 가명과 일치하는 이름이 있다면 언론사에 치명적이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법원은 "(대학) 행정실이나 학생회에 '○△◇'이라는 학생이 있는지 확인절차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확 인절차를 생략할 만한 긴급성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성명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2013가단208798). 따라서 가명을 사용할 때에는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제3자가 취재원을 소개하며 인터뷰에 이미 동의했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취재에 임했다. 그런데 취재원은 인터뷰에 동의한 바 없었다. 보도를 강행해도 될까?

А

이 사안에서 분명한 사실은 취재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기자로서는 어느 시점까지 취재원의 동의가 있었 다고 믿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믿음이 법적으로 보호받 기는 쉽지 않다. 가령, 취재원을 소개해준 제3자가 취재원 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의 의사를 대신 표시할 자격과 권 한을 가졌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지 제3자의 말을 근거로 동의가 있었다고 믿은 기자의 신뢰에 효력을 부여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보도하기 전에 취재원의 동의를 받아 법적 흠결 을 보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도 당사자가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있다. 기사의 허위 혹은 진실 입증을 어느 쪽에서 해야 하나?

А

정정보도에 있어서 기사가 허위임을 입증할 책임은 원 칙적으로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측이 부담한다(언론 중재법 제14조). 단, 예외적으로 그러한 입증책임이 완화 되는 경우가 있다.

판결은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경우,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사실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2009다52649).

결국, 언론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에 따라 입증의 순서 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까지 언 급한 기사 내용이라면 피해자 측이 보도의 허위성을 입증 해야 하고, 막연한 의혹 제기 기사라면 언론사 측이 먼저 보도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들을 제시해야 한다.



외주 제작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발주사인 방송사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나?

Α

외부 프로덕션에 의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은 일종의 '도급'으로서 원칙적으로는 방송사(발주사)에 책임이 없다 (민법 제757조). 그런데 실무상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제작, 편집, 방영에 이르기까지 방송사가 용역 전반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납품된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편집권한이 방송사에 유보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방송사 역시 외주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외주제작사가 당사자 동의 없이 영상촬영을 강행하여 문제된 사안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편집 · 방송권등이 외주사가 아닌, 방송사에 귀속되고 있음을 근거로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와 공동하여 피촬영자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2007다59912).

조정심리에서 중재부는 언제 직권으로 손해배상을 결정하나? 또. 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А

직권조정결정은 조정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중재부가판단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내려진다(언론중재법 제22조 제1항).

특히, 손해배상지급이 결정되는 사안은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으로 위법성이 명백하고 보도의 공익성, 진실성과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결여된 경우라고 할수 있다.

언론소송에서 인용되는 대부분의 손해배상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 산정은 '보도' 와 관련된 사정(기사의 내용과 크기, 게재경위와 목적, 사 회적 영향 등), '피해자' 관련 사항(피해자의 나이, 성별, 신 분, 사회적 위치 등), '언론사' 관련 사항(발행부수, 공신력, 재정상태 등), 그리고 '보도 이후' 사정(후속보도 여부, 언 론사의 추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루어진다



조정을 진행한 결과, 신청인 주장이 실익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처리하나?

Α

조정심리 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거나 정정보도 등을 행사할 정당한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부가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 21조제2항).

여기서 '정당한 실익이 없는 경우'라 함은 원보도와 같은 비중으로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 등이 이루어져 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정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않고 지엽말단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한편,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청구의 경우,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 등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위법한 때,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에는 중재부가 각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기사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언론사와 더불어 취재기자 개인도 피소될 수 있나?

А

언론의 취재 및 보도행위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작업이다. 그래서 취재기자는 물론이고 데스크, 편집국 등 다수가 보도행위에 관여했을 것이다. 이처럼 다수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관여한 사람 모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민법 제760조).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보도행위에 관여한 사람 모두와 그들의 사용자인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 고, 그 중에 취재기자를 포함한 일부 당사자만을 선별해 소송을 낼 수도 있다.



언론사가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후, 기사작성의 책임을 물어 소속 기자에게 구상할 수 있나?

А

구상권이란 채무자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경우 채무당사자에게 금전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다. 그런데 연대채무나 보증채무처럼 다수의 사람이 채무자인 경우,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서는 범위의 채무까지 변제한 경우 구상권이 생기기도 한다.

언론소송에서 언론사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민법 제756조). 즉, 언론사 또한 자기 채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상권 행사의 핵심은 전체 손해 중에서 보도행위 관여자들 각각의 자기 부담 부분인데 이론적으로는 언론사가 스스로 부담해야할 몫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으나 그것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현재 일부 언론사들은 사규 등에 구상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자의 과실이 현저한 경우가 아니면 별도의구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기자가 신분을 속이고 취재했다면 문제되나?

А

보도 목적이 아무리 공익적이라도 취재 수단의 불법성 을 항상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사학 재단의 비리를 취재하고자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서무과장 집에 들어가 서류를 챙긴 기자에게 위법성을 인정,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또, 법원은 모 방송사 기자가 장교로 근무하는 후배로부터 부대 출입에 필요한 임시출입증을 얻어 군부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흥주점의 실태를 잠입 취재한 사례에서 초소침범죄를 인정,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2008도11009).

이처럼 위장취재는 그 위법성이 대체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형법 제20조에 의하여정당한 업무행위가 될 수도 있지만 정당화를 위해서는 취재 보도 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균형성, 방법의 상당성 · 긴급성 · 보충성 등이 요구된다(2006고합177).



다른 기관이나 회사 사무실에 취재차 방문했는데 담당자가 업무방해를 주장하며 나가라고 하는 경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

Α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형법 제314조 제1항). 이에 따라 기자가 해당 기관이나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범죄성립의 관건이 될 것이다. 업무를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소리를 치거나 행패를 부렸다면 모르겠지만 단지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대신, 퇴거불응죄에 해당할 수는 있다(형법 제319조 제2항). 물론,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기관의 퇴거명령이 정당해야 할 것이다. 퇴거불응죄가 적용되면 주거침입죄에 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석에서 공인과 나눈 대회를 동의 없이 녹음한 뒤 보도에 사용하면 음성권 침해인가?

А

대화의 주제, 내용 등에 따라 음성권 침해 여부가 달라 질 수 있다.

만일 대화의 주제, 내용 등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거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면 음성권 침해가 되지는 않을 것 이다. 그러나 사적인 내용의 대화였다면 음성권 침해는 물 론, 내용적으로도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음성녹음파일 공개와 관련해 그 내용 이 "가족 내부의 사적인 것"이라는 이유로 공개행위의 공 익성을 부정했다(2013가합205057).

한편, 이 사안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화 내용을 녹음한 주체가 대화의 일 방 당사자인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기자가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몰래녹음했더라도 형사처벌되지는 않는다.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음성 파일을 입수했다. 이 파일을 보도에 내보내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나?

Α

대화의 비밀 침해와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하는 1차적인 대상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다(제16조 제1항 제1호). 이에 따라 대화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2차적으로 처벌하는 행위는 "위법하게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이다 (제16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애초에 위법하지 않은 녹음파일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공개하더라도 법위반이 아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사안에서 형사처벌 문제와는 별개로 음성권 침해가 문제될 수는 있다. 특히, 대화 당사자들이 공인이 아닌 경우 육성을 그대로 내보내면 음성권 침해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언론사 퇴직 후 재직 중에 쓴 기시를 모아 책을 내고자 한다. 언론사의 동의가 필요한가?

А

프리랜서가 아닌, 특정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가 쓴 기 사는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기사의 저작권은 기사를 쓴 기자가 아닌, 해 당 언론사에 귀속되며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동의 없이 책 을 내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업무상 저작물'이라 함은 기자가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취재하거나 작성한 기사·사진·칼럼·동영 상·만평 등을 모두 포함하며 해당 언론사의 이름으로 공 표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기자가 언론사 재직 중에 쓴 기시를 모아 책을 내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언론사의 동의를 받아야 분 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미술품 전시 소식을 다루면서 전시된 그림 몇 점을 뉴스에 내보냈다. 미술관 측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면 언론사에 법적 책임이 있나?

А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저작권법이 규정한 보도 관련 면책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방송 · 신문 등에서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6조). 이에 따라 스케치 형태로 전시장의 모습이 나갔거나 전시물 중 몇점이 짧게 방송뉴스에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도 · 비평과 같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5조의3). 예를 들어, 해당 뉴스가 미술전시회를 알림으로써 관람객의 내방을 유도하는 정도였다면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타 방송사 프로그램 영상(30분 분량)을 1분 정도 짧게 보여주고자 한다. 가능한가?

А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할 수 있고 또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용할 수 있다(제28조, 제35조의3).

여기서 저작물 이용이 정당한지 여부는 제작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영리성 유무,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의 현재적 혹은 잠재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 사안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영상의 전체 길이에 비해 이용하고자 하는 영상의 길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 지 않으므로 미디어 비평을 위해 해당 영상을 사용하는 것 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유튜브 동영상을 언론사 SNS에 올리려고 한다.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나?

Α

유튜브 동영상은 대체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다. 따라서 해당 동영상을 일반인들이 접근가능한 다른 사이트에 게재하고자 한다면 이는 '복제' 및 '공중송신'에 해당하여 워칙적으로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 동영 상을 유튜브 아닌 다른 SNS에 게시할 수 있는 제도를 운 영하고 있다. 이 기능을 이용한다면 저작권에 대한 고민 없이도 동영상 게재가 가능하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면책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보이거나 들리는 공표된 저작물이라면 시사보 도 목적으로, 또는 인용의 방법으로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언론사가 관리하는 온라인 공간에 단순게시하는 것을 보도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정당한 범위'는 저작물의 극히 일부 분량을 의미하므로 영상 전체 또는 상 당 분량을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언론분쟁 예방교육 안내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예방을 위해 현직 언론인이 알아야할 법적 지식과 위원회 조정 · 중재제도를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교육대상 I 현직 기자 및 PD

※ 수습 및 인턴기자도 가능

교육시간 1 1~3시간

교육장소 I 해당 언론사 또는 위원회 강의실

교육내용

-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사례
- 인격권 침해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 언론조정 · 중재 절차 소개 등

교육신청 및 문의

- 위원회 홈페이지 (www.pac.or.kr)
- 위원회 교육운영팀 (02-397-3092~5)
- ※ 교육은 원칙적으로 무료이며,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특정 주제로 심화 교육 및 2일 이상 교육도 가능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인 교육 교재 알면 유용한 언론분쟁 Q&A

기 획 | 언론중재위원회 교육콘텐츠팀

발행처 | 언론중재위원회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15층

02-397-3114 / www.pac.or.kr

발행일 | 2015, 12, 18,

제 작 | ㈜희망공작소

- 이 교재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 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 교재 내용의 무단 복제 및 전재,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 교재 관련 문의는 위원회 교육콘텐츠팀 (02-397-3063~4)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81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인 교육 교재

알면 유용한 언론분쟁 Q&A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15층 언론중재위원회 Tel 02.397.3114 Fax 02.397.3089

